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9

(2015. 9.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2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금)

4. 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동 조례안은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광진흥센터와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추진 및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5조제2항제2호)
- 나.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부문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관광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 범위 규정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라.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 규정 신설(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및 안 제22조)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마포구 관광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찾아오는 마포구 관광객 유치에 위해 마포구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외국인관광객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제한됨으로써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 지원근거를 신설함.
※ 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단서규정(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지원근거)이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마포 관광 진흥 전담조직인 관광 진흥 센터 설립예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대상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가.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나. 안 제6조에서는 마포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민간부문 등 지원근거 신설함.
 - 지원대상 :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
 - 지원내용
 -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및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 3)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 지원방법 :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 신설
 - ※ 관광(의료관광 포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7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다. 안 제8조 ~ 안 제9조에서는 관광 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 범위와 규정을 신설함
 - 1) 마포구 지역 관광 진흥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광 진흥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
 - 2)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 상가 1층에 설치하되,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 3)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
 -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분석, 연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 관광활성화 및 관광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관광브랜드상품 및 수익형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각종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
- 구에서 설치한 각종 관광안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10조 ~ 안 제17조, 안 제22조에서는 마포구 관광 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 기준을 구체화함.

- 1) 위탁대상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2) 위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 3) 수탁자 선정기준
 - 센터 및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 실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4)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5)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1명(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
 - 구성내용
 - 당연직 위원 2명 : 관광업무 소관국장 및 과장
 -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광 분야 전문가 4명
- 6) 협약체결
 - 협약내용 :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의 취소사항 등
 - 재협약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결과 평가 후 수탁자 적정여부 판단
- 7) 지도·감독 :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권 규정
- 8)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하고 일부 조문상의 표현을 변경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마포관광기념품 개발 등 민간부분과의 관광 협력사업 필요성 증가, 관광사업 관련 추진 시 민간 지원근거 및 관광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 6.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조례가 결정 된 이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그 간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때 보류 중인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문화관광과에 매년 업무계획 보고 시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단기계획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마포 관광 미래에 대한 계획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테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관련부서에 요구하여 2015. 7. 10.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4개년 : 2015~2018)」에 대한 설명보고회를 가진 바 있음.
- 또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 7. 10. 마포구와 MBC가 공동 추진하는 상암동 「DMC 문화축제계획」 설명보고회 및 MBC 방송국 등 관광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마포구 관광산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 주소를 몸소 체험한 바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의 하나인 ‘젊음과 낭만의 문화예술도시, 마포’로 계획 실천을 위해 2015. 9. 3. 서교 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구 관광업계 관련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 관광 조찬 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7회)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 따라서, 마포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마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광산업으로써 이제는 민·관이 구분될 수

없으며, 이번 조례에 마포구 관내에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과 위탁관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도 동 조례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한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마포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됨이 없고, 2015. 4. 23. ~ 5. 13.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나, 검토결과 수정 할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안내소”를 “센터”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관광업무의 특성상 민간인의 창조성을 중요시 하여,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삭제하며, 부칙 제2조 중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관 계 법 규

관광 진흥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9호, 2014.5.28,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들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2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 동 조례안은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대비,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 나.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안 제3조)
- 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마.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시 발생하는 세입, 세출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의 예산은 특성상 관광객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광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 조성 후 기금보다는 예산 당해 연도 처리 원칙

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는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 4. 23. ~ 5. 13.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나.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다. 안 제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함

-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
-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 수익금
-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라. 안 제5조에서는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규정함

-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바. 안 제6조에서는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

사. 안 제7조에서는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5. 6.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2015.3.18. 합정3구역 기부채납시설 활용방안으로 마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포 관광진흥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그 간 문화관광과에서 마포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인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4개년 : 2015~2018)」을 수립하여 2015. 7. 10.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마포구와 MBC가 공동 추진하는 상암동 「DMC 문화축제계획」 설명보고회 개최는 물론 2015. 9. 3.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구 관광업계 관련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관광 조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포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에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과 위탁관련 세부적인 기준과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과 동시에 동 조례도 제정되어야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재원을 총당하는 관광사업 특별회계(5년 간)를 보면 세입은 약 19억 5천만 원이고 세출은 약 16억 5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합정3구역 및 상암DMC 시설 사용료는 월임대료에 따른 수입

으로 예상수입을 추계할 수 있으나,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약 1,9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4. 1. ~ 6. 5. 까지 실시한 ‘제1회 마포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37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4작품(우수 2, 장려 2)이 선정되었으나, 실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마포구 특산품인 관광기념품 수입금으로 1,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 등 비용추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에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함께 마포관광기념품 개발 등 세입방안도 강구하여 자원부족으로 마포관광산업활성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성공적인 마포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규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제835호(2011.11.3. 제정)

제6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특별회계와 기금 성격 비교

구 분	특별회계	기 금
근 거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관련조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사유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액 충당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영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 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 편성 ↓ 지방의회 심의·의결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조정 ↓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결산	• 지방의회 심의·승인	• 지방의회 심의·승인